

<p>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</p> <p>1. 제안일자 및 제안자 가. 제안일자 : 2001년 6월 23일 나. 의안번호 : 제912호 다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장</p> <p>2. 개정이유 각종 재해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정원을 보강하려는 것임.</p> <p>3. 주요골자 가. 총정원 감축 : 106명(안 제2조 본문) -(현행) 15,340명 → (개정) 15,446명 나.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 : 106명(안 제2조제2호) -(현행) 4,874명 → (개정) 4,980명</p> <p>4. 검토의견 【 총괄부문 】 ○ 소방공무원 5개년 증원계획에 의해 행정자치부가 2001년 6월 15일자로 서울시에 106명의 소방직 공무원의 2001년도 증원을 승인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.</p> <p>【 세부사항 】 ○ 지난 127회 임시회에서 동 조례를 개정할 당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설치 및 보강계획에 의해서 서울시가 2001년 4월 24일자로 행정자치부에 소방현장 보강인력 106명 증원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임. ○ 지난 조례 개정시 검토보고에서도 서울종합방재센터는 화재, 수재, 지진, 건축물·교량 붕괴, 대형 교통사고 등의 도시재해가 소방직만으로는 대처·예방에 한계가 있어 도시방재 전문가 또는 각 분야별 전문가의 우선적 확보와 전 정보화시스템 구축이 긴요한 과제인바,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지난번 국지성 호우로 발생한 수재시 효율적 대처가 어려웠음을 지적하고자 함.</p> <p>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</p> <p>1. 제안일자 및 제안자 가. 제안일자 : 2001년 8월 29일</p>	<p>나. 의안번호 : 제942호 다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장</p> <p>2. 개정이유 현행 박물관의 명칭을 설립주체 위주로 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박물관의 성격, 전시내용, 설립 및 운영주체 등을 함축하고 내·외국인들이 친근감을 갖고 쉽게 부를 수 있도록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.</p> <p>3. 주요골자 설립주체 위주로 되어 있는 「서울특별시립박물관」의 명칭을 「서울역사박물관」으로 명칭을 변경함(안 제71조)</p> <p>4. 검토의견 【 총괄부문 】 ○ 서울시가 설치하는 대부분의 기관명에서 '시립'이라는 설립주체 중심의 명칭을 이용 시민·내용중심의 명칭으로 변경되고 있어 '서울특별시립박물관'의 기관명을 '서울역사박물관'으로 개정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이용시민 중심의 명칭 개정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</p> <p>【 세부사항 】 ○ 우리 시가 설립중인 동 박물관은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일반시민이나 청소년이 직접 체험하는 국내 최초로 도시역사박물관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, ○ 역사학계, 관계 전문가 등의 명칭변경은 바람직하다는 견해 등을 고려해볼 때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됨.</p> <p>-----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본문중 "15,340명"을 "15,446명"으로 하고, 같은조제2호중 "4,874명"을 "4,980명"으로 한다.</p> <p>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-----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장제11절의 제목 "서울특별시립박물관"을</p>
---	---